

202.81호

행정 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 행정명령 202.22호부터 202.26호 및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호, 202.44호, 202.45호 및 202.53호, 202.57호 및 202.64호와 202.69호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행정명령 202.75호 및 행정명령 202.74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2021년 1월 10일 일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하며, 다음을 본 행정명령 일자부터 2021년 1월 10일 일요일까지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경마, 패리뮤추얼 게임 및 교배법(Racing, Pari-mutuel Wagering and Breeding Law)의 제221-a항은 게임위원회(Gaming Commission)가 비상 명령으로 정부의 폐쇄 명령으로 인한 경마 취소로 건강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기수의 기준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 교육법(Education Law) 제2018-a항 및 제2018-b항 및 제1951항의 부속절 2의 문단 s, 무재자 투표 용지의 요청 또는 수령을 위해 코로나19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포함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

또한, 비상사태 동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 명령 일자로부터 2021년 1월 10일 일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수정 및 지속합니다.

- 202.28호에 포함된 지침을 수정하고 행정명령 202.75호로 지속된 행정명령 202.48호에 포함된 지침, 모든 상업적인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또는 모든 상업적 모기지의 미납으로 담보권 행사를 진행 또는 집행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2021년 1월 31일 일요일까지 지속합니다.
- 행정명령 202.79호에서 지속된 행정명령 202.30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에 따라 28조 일반 병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얻지 못한 환자를 퇴원시킬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단, 그러한 환자가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정책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 감염 기간을 지난 경우에 한하며, 해당 시설이 해당 환자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다고 처음 인증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한정 시설에만 적용됩니다.

- 행정명령 202.79호에서 지속된 행정명령 202.61호에 포함된 지침은 뉴욕시 내 실내 식사에 대한 허가를 일시 중지하도록 수정되었으며, 2020년 12월 14일 월요일에 발효됩니다.
- 코로나19 집단감염 기반 사례에 근거하여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주 내 공중 보건 제한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을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202.68호에 포함된 지침은 2020년 12월 14일에 발효되어, 보건부에 의해 "오렌지존"으로 지정된 지리적 구역 내의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또는 수업이 2020년 12월 14일부터 보건부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25% 수용 인원으로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수정되었습니다. 이발소, 헤어 살롱, 스파, 문신 또는 피어싱 가게, 네일 기술자 및 네일 살롱, 미용사, 에스테티션, 레이저 제모 및 전기 분해의 제공 및 보건부가 "오렌지존"으로 지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 위치한 다른 모든 개인 관리 서비스를 2020년 12월 14일부터 운영할 수 있으며, 보건부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단, 그러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수행하는 직원이 사업체가 "오렌지존" 내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매주 코로나19 진단 테스트를 받으며 직원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7일 이내에 음성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먼저 받지 않고 재개한 사업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